

## A Plan for Effective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the Community

- Focused on Volunteer Fire Department -

Gi Geun Yang<sup>1#</sup>, Jae Wook Lee<sup>1</sup>, Junhwi Park<sup>2+</sup>

<sup>1</sup> Depart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sup>2</sup>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14, Taebong-no, Se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oblems and a development plan in the leg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pects of volunteer fire department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and duty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should be revised from 'Assistance in Fire Service' to 'Support and Cooperation in Fire Service' in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which could make its role voluntary and initiative instead of being passive and heteronomous. Secondly,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should be positioned as a 'community safety guard' to support fire-fighting activities as a local disaster prevention leader rather than just a volunteer.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ir continuous participation not only by enhancing their psychological satisfaction but also by providing financial rewards such as salary and retirement allowances for those who work for several days a month.

**Key words:** volunteer fire department, fire service, volunteer, community safety guard

### 1. 서론

최근 밀양세종병원화재(2018.1.26.)와 제천스포츠크터화재(2017.12.21.) 등 잇따른 화재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화재 양상은 대형화 추세이고, 그 피해 범위와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어 막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는 그 특성상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연재해와 달리 예측하기도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화재 대응은 발생 초기에 신속한 신고와 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원봉사자로 조직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효율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방공무원보다 지역의 여러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현지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수시로 지역의 위험요인에 대해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up>#</sup> The 1st author: Gi Geun Yang, Tel. +82-63-850-6399, Fax. +82-63-850-6907, e-mail. withgg@wku.ac.kr

<sup>+</sup> Corresponding author: Junhwi Park, Tel. +82-2-3460-5174, Fax. +82-2-571-7488, e-mail. krpark@kic.re.kr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는 소방조직의 유일한 민간봉사단체로서 3,853개에서 94,932명이 활동(National Fire Agency, 2016)하고 있고,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지역에서의 지역방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사회발전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Hur, 2008: 1). 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만 증원하거나 장비를 첨단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난 발생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상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그 운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II. 의용소방대의 필요성 및 운영실태

### 1. 의용소방대의 필요성 및 분석틀

화재 등 재난은 지역에서 시작되어 지역에서 끝난다. 지역사회 주민은 재난의 잠재적 피해자이자 동시에 재

난관리의 중요한 행위자이다. 즉, 지역사회 주민은 재난의 초기대응을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더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재건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또한 재난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한 재난관리가 필요한데,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또한 지역주민이다(Cheon & Yang, 2011; Choi & Chang, 2017). 이러한 논리에 가장 적합한 지역 중심의 자율적 소방조직으로는 의용소방대가 있다.

의용소방조직은 세종 19년(1437년)에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어 도둑들이 성행하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도둑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고을마다 제대한 군인 등이 자율적으로 지방의용금화조직을 만들면서부터 탄생하였듯이(Hur, 2008: 6) 지역에 기반을 둔 자발적 조직이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재난안전 효율화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 일본의 의용소방대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법적 측면의 근거, 설립 및 운영, 행정적 측면의 조직 및 인력, 임무 및 활동,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재정적 측면의 수당 및 보상금과 보험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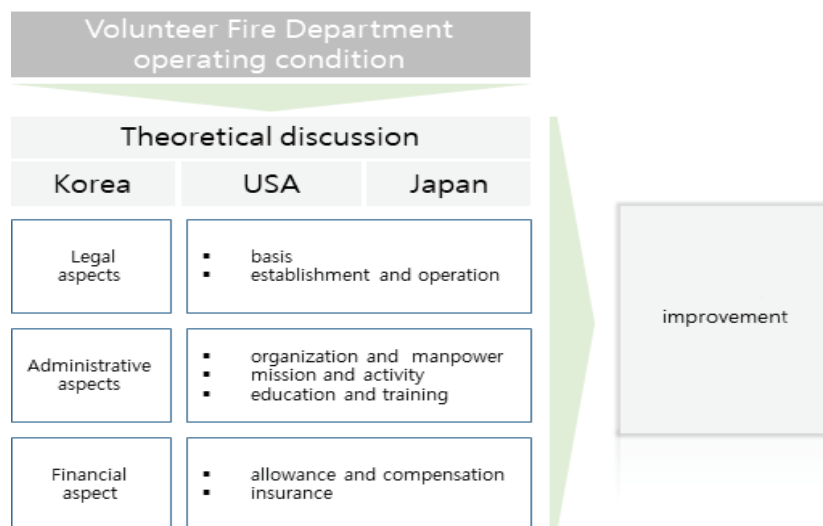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framework

## 2.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

### 1) 의용소방대의 법적 측면

의용소방대의 법적 근거는 『소방기본법』 제1조 및 제2조 제5호 다목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이다. 또한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설치된 일선의 소방조직이다.

의용소방대원의 임명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들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구역 내에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 그리고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졌거나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하며(Firefighting Basic Law, §3), 정년은 65세로 하고 있다(§5).

### 2) 의용소방대의 행정적 측면

#### (1) 조직 및 인력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조직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령에 의해 전국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구역의 인구수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조직 편성과 실제 운영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며, 의용소방대는 시·도, 시·읍 또는 면에 둔다. 또한 관할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한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두며,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6).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시·도 또는 시·읍은 60명 이내, 면 또는 전문의용소방대는 50명 이내로 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3,853개 의용소방대에 94,932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다.

#### (2) 임무 및 활동

의용소방대의 성격은 크게 3가지 즉, 소방력 보조자로서의 성격, 자원봉사자로서의 성격, 지역방재의 지도자로서의 성격이 있다(Lee, 2005: 5-16).

의용소방대의 임무(§7)는 첫째,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둘째,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셋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의 대피 및 구호업무 보조, 넷째, 화재 예방업무의 보조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 및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리고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등이다.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지만,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9). 소집명령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하며,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10).

#### (3) 교육 및 훈련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을 살펴보면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

의 제도, 화재 진압장비의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와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을 3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난(水難) 구조와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등 매년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3).

### 3) 의용소방대의 재정적 측면

의용소방대에 1일에 4시간 이내에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1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고 있으며(Enforcement Rule of the Act, §20),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질병과 부상, 그리고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Enforcement Rule of the Act, §21).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6년 경상북도소방본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원의 수당, 대원에 대한 상해·사망 보상금, 의용소방대의 장비관리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는 관할소방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 및 그 밖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대기근무) 또는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 등에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 1일 1회에 한하며,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방 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출동(대기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출동수당 이외에 2분의 1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재해보상으로 요양보

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그리고 유족보상이 있다.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원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Gyeonggi Province Youth Development and Scholarship Support Ordinance, 2011).

## III. 외국의 의용소방대의 운영 실태

### 1. 미국의 의용소방대 운영 실태

#### 1) 법적 측면

미국에서 최초로 의용소방대를 조직한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이다. 1733년 벤자민 프랭클린은 펜실베니아 가젯(Pennsylvania Gazette)이란 신문에 화재의 위험성과 화재방어를 위한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자주 썼으며, 누구의 재산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화재와 싸울 수 있는 조직을 원했다. 1736년 필라델피아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난 그는 “The Union Fire Company”라 불리는 30명의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소방조직을 탄생시켰다.

공적인 소방을 두고 있는 도시에서는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령을 두지 않고 단순히 주민의 자치조직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미연방 국가소방자료센터 자료(NFCD, 1999)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만으로 구성된 소방관서가 전국 소방관서의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행정적 측면

##### (1) 조직 및 인력

미국의 소방조직은 직업 전임소방공관 편성된 소방관서가 있는가 하면 의용소방대원이 일부 또는 대부분으로 편성된 소방관서도 있고, 전임소방관 없이 전부 의용소방대원만으로 편성된 소방관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편성되어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전임소방공관과 의무소방대원<sup>1)</sup>은 모두 1,134,400명이

1) career firefighters는 전임소방관, volunteer firefighters는 의용소방대원으로 본 논문에서는 번역하였다.

다. 이 중 전임소방관은 346,150명이며(31%), 의무소방대원은 788,250명(69%)이다(NFPA, 2016).

의용소방대는 소수의 간부나 기술자, 운전원 등만을 상근 전문직원으로 해서 고용하는 경우와 상근직원을 일체 고용하지 않고, 화재 시에 각 직장에서부터 소방장비 설치 장소에 집합하여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

의용소방대는 정부나 단체로부터 세금이나 장비의 헌납을 포함한 공공활동 및 기부금 등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조직된 공공 소방조직의 한 형태이다. 의용소방대는 장비와 소방파출소를 가지면서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봉사조직이다.

미국의 의용소방대 운영은 지역의 여건과 소방 환경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를 주도하는 지역과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운전 등의 일부 인원은 전임직업소방관으로 배치하는 지역도 있다. 따라서 전임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을 구분하는 주요한 차이점은 전임소방관들은 근무시간에 배치되고, 정례기준에 맞는 보수가 지급되는데 비해, 의용소방대원은 회의, 훈련기간, 비상대응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봉사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 (2) 임무 및 활동

미국의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은 미국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코드에 규정된 직업소방관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소방관은 정규 근무시간에 배치되고, 보수가 지급되는 반면에 의용소방대원들은 회의, 훈련기간, 비상대응 등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무를 정식으로 요구받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지역공동체가 직업소방관을 두는 이유는 직업소방관들이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전임소방관이 소방장비를 갖추어 화재현장으로 출동할 때는 유·무선통신을 통하여 경보신호를 보내고, 의용소방대원들은 경보시 최소한 4명으로

대응을 해야 하며, 경보를 받은 의용소방대원들은 화재현장으로 직접 출동하게 된다. 소방행정관들은 소방대원들이 충분한 활동을 결정하기 위한 대응기록이 언제나 적합한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는 직업소방관서와 연합하거나 자체 단독으로 지역 내의 소방활동과 긴급재난사고대응 및 수습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 (3) 교육 및 훈련

의용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은 소방교육훈련의 유형과 양, 질 등 바람직한 지표를 미리 설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즉, 직업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은 매해 연초에 수립된 종합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화재진압 교육훈련은 대도시와 카운티 소방관서의 경우 보통 자체훈련시설과 정규훈련 교관을 보유하여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신규소방대원들은 정식으로 임무를 부여받기 전에 적어도 2~3개월 동안 전문소방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내용은 화재진압훈련, 위험물질 대응훈련, 응급의료서비스(EMS)훈련, 응급의료전문가(EMT)훈련, 구조훈련, 특수사고대비훈련 등을 실시하고 평가하며, 이러한 소방훈련프로그램은 주의 대학이나 주정부내의 교육기관에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 3) 재정적 측면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비용, 그 지역의 정치적 풍토, 지역의 성장과 소방부문의 변천, 기타 방화 정책 등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의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재정적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작은 지방정부들은 소방대기소 관리인과 몇 명의 직업소방관을 두면서 인건비, 피복비, 기타 보상을 받지 아니하는 순수 자원봉사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공적 소방을 설치하는 지역에서는 조례에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수당, 재해보상에 관한 내용

을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울러 의용소방대원은 정규소방관보다 동기부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첫째, 포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표창장 수여, 장기근속자 포상 등 봉사자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 소방지원 활동에 따라 인적·물적인 희생이 따르는 바, 이에 대한 조세감면정책, 고용원조프로그램, 수업료 변상제도, 연공가점 및 상여금제도 등 경제적 급부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달리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며, 불구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소방활동 중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넷째, 의용소방대원에게는 각종 사회활동시 지원, 공공시설 무료사용, 신규모집의 편의 제공, 뉴스레터 발간 등 여러 가지 분야의 사회활동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 2. 일본의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 1) 법적 측면

1880년 처음으로 프랑스의 소방을 기초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설치되었으나 전국적으로 공공 소방조직은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사설소방조직이었다. 1896년 내무성이 소방규칙을 공포하고 소방조의 조직 및 운영의 기준을 정하여 부·현지사의 관장으로 두었고, 1939년 경방단령 29호로 소방조는 경방단으로 개조되었다. 경방단은 시·정·촌의 신청 또는 지방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설치하고 단장, 부단장, 부장, 반장 및 경방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비용은 시·정·촌이 부담하게 되었다.

1947년 소방조직법의 제정 및 소방단령이 공포되어 전국의 시·정·촌에 자율적 소방단이 조직되었다. 소방단은 주로 화재의 경계·진압과 기타 재해의 방재 및 피해의 경감 등의 소방활동에 종사하였다.

### 2) 행정적 측면

#### (1) 조직 및 인력

소방단은 『정부조직법』 제9조에서 시·정·촌의 소

방기관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단’의 3개 기관의 정부 또는 일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단은 전임직업소방과 위상을 같이하여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서 소방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소방대원을 보조하는 역할과 함께 화재의 예방과 방재의 계몽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단의 업무는 총무성 소방청의 경우에는 본청 소방과에서, 동경 소방청의 경우에는 본청 방재부 소방단에서 처리하며, 현의 시의 소방본부(소방국)는 소방부 소방과 소방단계에서 처리하고, 소방서의 경우에는 소방계에서 처리한다. 소방단원은 소방업무가 본업도 아니며, 향토애호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소방활동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자원봉사단체이다. 그럼에도 단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의거 특별직(비상근)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단원의 최고책임자는 시·정·촌장이다.

각각의 직업을 가진 지역주민이 자신의 의사로 소방단에 입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여성의용소방대에 해당하는 여성소방단원이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국에 2,200개의 소방단이 있으며, 86만명이 활동하고 있다(Dong-A Ilbo, January 6, 2018).

소방단의 입단자격은 18세 이상의 지조견고하고, 신체 강건한 자이며, 당해 소방단의 구역 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소방단원은 모두가 지휘명령계통과 직무관계를 명확하게 지키도록 조직활동을 의무화 하였고, 임무수행상 단독행동은 용서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엄격한 7단계의 계급제도(단장·부단장·분단장·부분단장·부장·반장·단원 등)를 두고 단원들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 (2) 임무 및 활동

소방단의 임무는 『소방조직법』 제1조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수화재(水火災) 또는 지진 등 재해의 예방과 재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소방단 임무를 평상시와 유사시로 구분하면 평상시

에는 화재의 예방, 경계, 교육과 훈련, 소방장비의 점검·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화재, 풍수해, 지진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에 적합한 대응활동을 수행한다.

화재·지진·태풍 등의 재난·재해 시에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신속한 경계 및 대응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등 지역방재의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소방단원은 주민에 대한 방재지도 및 응급처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3) 교육 및 훈련

소방단 교육은 일반교육, 간부교육, 신입단원교육, 임무반별 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반교육은 모든 소방단원의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의 교육·훈련을 말하며, 교육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간부교육은 부단장 이상의 간부 및 간부승진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간부로서의 필요하는 일반적 교육·훈련을 말한다. 그리고 임무반별 교육은 각 임무반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신입단원교육은 신입단원의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특별교육은 상기 이외의 교육·훈련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 3) 재정적 측면

소방단원은 소방업무가 본업도 부업도 아니다. 소방단원은 사회봉사와 자원봉사단체로 인식되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향토애호의 정신을 기초로 한 자원봉사단체이다. 소방단원에게는 연간 일정한 금액의 보수가 지급되고 재난·재해와 훈련에 출동한 경우에 수당이 지급되며, 5년 이상 근무한 단원이 퇴단한 경우에 퇴직보상금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소방단 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요양보상, 휴양보상, 상병보상연금, 장애보상, 유족보상, 장제보상 등의 복지혜택과 직무에 공로·공적이 있는 단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사기를 양양하고 있

며, 소방단의 활동에 필요한 제복 등을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우와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다.

### 3. 미국, 일본, 한국 의용소방대의 비교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대의 법적 측면, 행정적 측면, 그리고 재정적 측면을 비교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Ryu, 2013: 37-39).

## IV. 의용소방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의용소방대의 문제점

#### 1) 의용소방대 법적 문제점

##### (1) 의용소방대 역할의 모호성

의용소방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하며, 의용소방대는 화재의 경계 및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그리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의 대피와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집회 및 공연 등 각종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과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화재와 화재로 인한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소방업무 이외의 지진이나 해일 등 다양한 자연재해와 인적 재해에 대한 보조 임무에 소홀할 수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어 수동적·타율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보조라는 개념의 사전적 의미로 주되는 것에 상대하여 거들거나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방업무의 주체인 소방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원하기 보다는 수동적·타율적으로 돕는 객체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Table 1. Comparison of volunteer fire department in USA, Japan and Korea

Division		Contents
USA	Legal Aspects	- fire station can only be set up as a volunteer firefighter - consisting of full-time or part-time - similar qualifications as occupational firefighters
	Administrative Aspects	-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al patten - activities alone - operating of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in a university or state - having specialized training instructors, Professional and repetitive education training
	Financial Aspect	- pay unpaid, small mobilization allowance payment - various program development motivation, economic benefits such as tax reduction, physical compensation, implementation of health insurance system
Japan	Legal Aspects	- operated by fire brigade - firefighter assist, enlightenment activity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 special positions (part-time) local officials
	Administrative Aspects	- seventh level system - leader of local disaster prevention - general, executive and special education for a certain period in firefighting school
	Financial Aspect	- welfare benefits such as medical care for injured crew, recreation, corporal disease, disability, survivor compensation - uniform payment - annual fixed annual salary payment, payment of allowance at the time of dispatch of disaster scene, retirement compensation payments for over 5 Years
Korea	Legal Aspects	- part-time job assistant for firefighter, fire prevention, promoting for local residents, various support activities against fire, damage from storm and flood, dispatch to the other disaster sites - city · province or town within 60 people, myeon or professional fire brigade within 50 people
	Administrative Aspects	- fire service force assistant, volunteer, leader of local disaster prevention - mainly installed and operated in Eup, Myeon, and Dong - regular education over 4 hours a month - conducting training at the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or Local Fire Service Academy
	Financial Aspect	- pay unpaid, payment of small allowance to dispatch, - Injury crew medical treatment during firefighting, disability, funeral service, survivor compensation, uniform payment

(2) 의용소방대 정원의 획일성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시·도·읍에는 60명 이내, 면 또는 전문의용소방대에는 50명 이내로 운영한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같은 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50%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때 지방 중·소도시에서 비해 화재 또는 각종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조례를 통한 탄력적인 의용소방대의 설치와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의 수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

조에 따르면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 제도,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등의 기본교육을 36시간 이상 하고,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용소방대원의 교육은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및 장비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은 소방공무원과 동일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수준의 질 좋은 교육내용과 장비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방공무원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과 교육수준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 2) 의용소방대의 행정적 문제점

### (1) 의용소방대 성격의 모호성

의용소방대의 성격은 크게 소방력 보조자, 자원봉사자, 지역방재의 지도자 등 세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명칭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주로 의용소방대를 소방서의 하위조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시·도보다 읍·면·동단위에 의용소방대가 설치·운영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이웃과의 정서적 교류가 적고, 직장중심의 생활이 보편화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지자체 중심의 관 주도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의 크고 작은 자연재해나 인적 재해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각종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가 지역방재활동자로서의 역할, 소방력 보조자로서의 역할 보다는 단순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자신도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로서의 자부심, 성취감, 사명감, 보람감 등의 내적 동기유발을 유발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지역주민들에게 의용소방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동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2) 지역방재 지도자로서의 역할 미흡

의용소방대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로서 지형이나 건축물의 특성, 시간대별 유통 인구와 차량이동의 실태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위험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고, 각종 재난에 누구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원은 지역 실정에 맞게 임용·배치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방재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관중심의 봉사활동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5: 84).

### (3)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부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

용소방대원의 자격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하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그 자격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물론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방관련 기술·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 또는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의 직업, 소방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은 매우 낮다.

### (4) 의용소방대원수의 지역 간 불균형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대형시설 및 화재위험도가 높은 건물들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약 980만명의 인구에 187개 의용소방대에 1,34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약 350만명)와 충청북도(약 160만명)와 비슷한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 자율방재라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 (5) 의용소방대 봉사활동내용의 일관성 부족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화재의 경계·진압 업무의 보조 및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그리고 화재 등 재난발생 시의 대피와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이 주임무이며,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리고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는 소방활동과 안전활동 이외에 자연보호, 교통질서, 청소년 선도, 독거노인 돌봄활동, 농촌일손돕기 등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라 자원봉사자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봉사함으로써 이미지 제고와 인식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의용소방대가 다른 봉사단체와 차이가 없고, 단순히 소방서와

관련 있는 자원봉사단체로 인식될 수 있어 의용소방대의 목적과 활동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 3) 의용소방대의 재정적 문제점

#### (1) 의용소방대원의 보수 및 보상금 미지급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소방 및 그 밖의 재난 업무를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의 경우에 장애보상, 요양보상, 장제보상, 그리고 유족보상 등 보상제도가 매우 잘 마련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일정 부분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5년 이상 근무한 대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다.

#### (2)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험의 미가입

미국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우리나라와 달리 건강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부상이나 화재 등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불구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다.

## 2. 의용소방대의 개선방안

### 1) 의용소방대의 법적 개선방안

#### (1) 의용소방대 임무에 대한 위상 제고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다. 앞의 문제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조’의 개념은 주체적이기보다 타율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성격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 관한 활동에 대한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소방공무원의 소방업무를 보조하지만, 다른 자원봉사활동과 달리 활동의 특수성과 위험성,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분야이다. 각종 화재를 포함한 재난·재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조한다’라는 것보다 ‘지원·협력한다’라고 개정해야 한다. 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와 제7조(임무)에 ‘재난현장에서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를 ‘소방업무를 지원·협력한다’로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의용소방대 정원의 탄력적 운영

현행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시·도·읍에는 60명 이내, 면 또는 전문의용소방대는 50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조례는 법체계상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대규모의 공공시설·산업시설 등이 있어 화재로부터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읍에는 60명 이내, 면 또는 전문의용소방대는 50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초과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의 전문성 제고

현행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교육훈련기관이나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방공무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활동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방관련 전문기관에서 동일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방관련 전문기관의 교육·훈련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해당지역의 소방관련 학교 또는 학과를 통해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 2) 의용소방대의 행정적 개선방안

### (1) 의용소방대 성격의 재구성

의용소방대의 성격은 소방력 보조자, 지역방재의 지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세 가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는 소방력 보조자와 지역방재의 지도자보다는 자원봉사자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이 때문에 활동에 매우 수동적, 소극적, 타율적인 성향이 띠게 된다. 자원봉사자의 성격이 두드러짐에 따라 무보수이지만 수당이나 다양한 보상이 뒤따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단순한 자원봉사자로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것보다 소방업무를 지원하지만 자율적인 참여를 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홍보를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외에 지역방재자로서의 소방업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 (2) 지역방재 지도자로서의 역할 확대

의용소방대는 지역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방서의 소방공무원보다 지역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이 발생하여 출동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재난 현장에 누구보다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고, 초기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건축물에 대한 인지가 높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재 및 각종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상시 감시·인지할 수 있고, 지역주민으로서 위험상황이나 불법건축물, 화재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불법주차장 등에도 주민과 의사소통에도 수월성을 띠고 있어 화재나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3) 의용소방대 선발과정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훈련 강화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도 필요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제반 활동에 필요한 직업과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한 소방기술 관련 자격 또는 경력자,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이외에 지역대학의 소방관련학과, 소방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목·건축·물리·화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인턴 의용소방대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하여 사회봉사 점수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당과 포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의한 의용소방대원 교육은 초임, 일반, 전문 과정으로 구분하여 많은 교육시간을 할애 할 수 없는 의용소방대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학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강사의 교육을 각 지역으로 소방학교 강사를 파견을 하여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4) 단체 가입을 통한 의용소방대원의 확충

대도시의 경우에 읍·면·동과 달리 주민 간의 사회적 교류나 혈연·지연·학연 등의 인간관계망 형성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용소방대 참여와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을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에서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 (5) 의용소방대 봉사활동내용의 차별화

현행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본연의 소방업무에 초점을 두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안전과 다소 거리가 있는 자연보호, 교통질서, 청소년 선도, 독거노인 돌봄, 농촌일손돕기 등의 활동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다른 자원봉사단체의 활동과 중복되는 것이 있고, 이러한 활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노출됨에 따라 다른 영역의 자원봉사자와의 차별화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 3) 의용소방대의 재정적 발전방안

#### (1) 의용소방대원의 보수 지급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소액의 출동 또는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였을 때 1인 1일 1회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보수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에 출동수당 이외에 일정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용소방대원에게 월별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였을 때에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자율적인 참여와 함께 소속감과 책임감 그리고 경제적 보상에 따른 만족감과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이 일정 기간(일본의 경우에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헌신에 대한 보상과 명예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Lee, 2011).

#### (2)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험 가입

의용소방대는 자원봉사자이지만 다른 영역의 자원봉사자와 달리 화재나 재난 및 사고현장에 출동하기 때문에 부상이나 상해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대원들에게 국비 또는 지방비로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대원들로 하여금 부상이나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원에게 요양보상과 장애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보상의 경우에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연액의 5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칫 사비(私備)로 추가로 지출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3) 재정 확보방안

우리나라의 소방재원조달수단은 일반재원, 국고보조금, 공동시설세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소방세, 재산세, 지방채, 각종기금 등 우리나라 보다 많은 부분에서 소방재원조달수단으로 소방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방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의용소방대 재정보호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연구 결과,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투철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된 의용소방대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의 법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으로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임무를 ‘소방업무의 보조’에서 ‘소방업무의 지원 및 협력’으로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수동적·타율적 활동에서 자발적·주체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방청과 지역소방본부의 홈페이지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동이나 홍보내용을 탑재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현재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역할, 소방인력과 장비, 각종 보상 및 포상과 관련한 인적·물적 통계자료, 홍보 등이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하여 의용소방대의 위상과 인식이 낮음을 의미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의용소방대의 정원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은 소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방관련 전문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상황에 따라 해당지역의 소방관련 학교 또는 학과를 통해 위탁교육을 실시하며 소방학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의용소방대의 행정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으로 의용소방대를 자원봉사자의 성격보다는 소방력 보조자, 지역방재의 지도자로 소방업무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주민이기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지역의 여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

고 있어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화재나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발과정에서부터 관련 직업과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지역대학의 소방관련학과 또는 소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재학생을 ‘인턴 의용소방대원’으로 참여하고, 그에게 필요한 사회봉사 점수, 수당 및 포상을 실시한다.

대도시의 의용소방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을 개인 또는 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참여를 촉진한다.

다른 영역의 자원봉사단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른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연환경, 청소년선도, 독거노인 돌봄 등은 지양하고,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소방업무에 초점을 둔다.

셋째, 의용소방대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으로 출동 또는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에 대한 수당 이외에 매월 일정한 일수를 근무하였을 때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심리적 만족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상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소방활동은 다른 봉사활동 영역보다 부상이나 상해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References

- Ahn, Kyung Ryul. 2007. Activation Plan of the Fire Brigade for Efficient Fire Disaster Prevention System. National Assembly Policy Book.
- Cheon, Mi Hee and Gi Geun, Yang.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ocal Autonomous Disaster Prevention: Focused on Volunteer Fire Department.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7(2): 23-40.
- Choi, Jin Jong. 2004. Introduction to Fire Science. Seoul: Hyungseul Publisher, Inc.
- Choi, Jong Tae. 2001. Introduction to Fire Science. Gyeonggi: DongHwa Technology Publishing.
- Choi, Young Chul and Ji Hyun Chang. 2017.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s Among Citizen Participation Factors Affecting Urban Development: Application of System Dynamics Approach. *Review of Korea Associ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14(1): 125-152.
- Chung, Gi Sung. 2009. The Active Measure of the Operation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Korea.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23(5): 138-142.
- Hylton J. G. Haynes and Gary P. Stein 2016. NFPA's U.S. Fire Department Profile. NFPA. <https://www.usfa.fema.gov/data/statistics/#tab-1>
- Hur, Nam Gil. 2008. A Study on a Plan for Activating Volunteer Fire Department: Centering on a Case of Volunteer Fire Department in Gyeonggi-do. Master's Theses. Gyeonggi University.
- Kim, Byum Soo, Sun Jin Kwon, Seung Yeon Shin, Jong Bok Lee, Young Hee Son, Ok Hee Chung, Yong Chung Chung and Eun Sook Choi. 2007. *Volunteer Management*. Hakjisa Publisher, Inc.
- Kim, Ju Hee. 2011. A Study on the Managerial Improvement of Volunteer Fire Brigade in Jeonbuk Province.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Kwon, Soon Kyung. 1998. Plan for Activating Volunteer Fire Department.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Lee, Eui Pyeong. 2011.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Japan.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25(6): 44-50.
- Lee, Hye Mi. 2008. A Study on the Factors of Participation in Voluntary Service in Disaster Management: Focusing on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Jeom Dong. 2005. A Study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 Volunteer Fire Brigade Operation System: Leadership Training in Disaster Management.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Lee, Kang Il. 2006.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Korean Volunteer Fire Corps. Master's Thesis. Samcheok University.
- Lee, Sun Jae. 2005.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Moon, Young Soo. 1992. Review of the Fire Administration System and Role of Volunteer Fire Department in Korea.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NEMA. 2012. Practice of Firefighting Activity for Volunteer Fire Brigade.
- Oh, Dee Soon. 2009. A Research about the Facts Influencing the Degree of Voluntary Activity of Volunteer Fire Fighters.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Park, Chan Seok. 2009. Study on the Effects of the Leadership Types of Volunteer Fire-Fighters Chief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Setting the Trust on Leaders as a Intervening Variable.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Ryu, Chang Jin.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Organization.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omepage. <http://law.go.kr>
- National Fire Agency Homepage. <http://nfa.go.kr>
- Gyeongbuk Fire Service Headquarters Homepage. <http://gb119.go.kr>
- The Dong-A Ilbo Homepage. <http://donga.com> 2018. 1. 6.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권순경. 1998.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범수, 권선진, 신승연, 이종복, 손영희, 정옥희, 정용충, 최은숙. 2007. 자원봉사론. 서울: 학지사.
- 김주희. 2011. 전라북도 의용소방대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창진. 2013. 의용소방대조직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수. 1992. 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의 고찰과 의용소방대의 역할.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석. 2009. 의용소방대장의 리더십유형이 의용소방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리더에 대한 신뢰를 매개변수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방방재청. 2012. 의용소방대 소방활동실무.
- 안경률. 2007. 효율적인 소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국회 정책자료집.
- 오대순. 2009. 의용소방대의 자원봉사활동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진안군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일. 2006. 한국의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 방재기술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재. 2005.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의평. 2011. 일본의용소방대 실태의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5(6): 44-50.
- 이점동. 2005. 한국의용소방대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방지도자 육성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미. 2008. 재난관리에 있어 자원봉사활동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희, 양기근. 2011. 지역자율방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7(2): 23-40.
- 정기성. 2009.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 고찰. 한국소방학회논문지. 23(5): 138-142.
- 최영출, 장지현. 2017. 주민참여 영향요인이 도시발전 수준에 미치는 인과관계 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의 적용. 한국지방행정학회보. 14(1): 125-152.
- 최종태. 2001. 소방학개론. 경기: 동화기술.
- 최진중. 2004. 소방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 허남길. 2008.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Received: Oct. 31, 2018 / Revised: Nov. 15, 2018 / Accepted: Nov. 22, 2018

## 지역사회 재난안전관리의 효율화 방안

–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운영 실태를 의용소방대 운영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화재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생 초기에 지역주민의 신고와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연구 결과, 의용소방대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임무를 ‘소방업무의 보조’에서 ‘소방업무의 지원 및 협력’으로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수동적·타율적 활동에서 자발적·주체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행정적 측면에서 의용소방대를 자원봉사자로서의 성격보다는 소방력 보조자, 지역방재 리더로서 소방업무를 적극적으로 돕는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하게 해야 한다. 셋째, 재정적 측면에서 출동 또는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에 대한 수당 이외에 매월 일정한 일수를 근무하였을 때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상을 통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주제어 : 의용소방대, 소방업무,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Profiles **Gi Geun Yang** : He received his B.A., M.A., and Ph.D. from Kyung Hee University.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at Wonkwang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08.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fire service administration, disaster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He has published 62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10 co-author books(withgg@wku.ac.kr).

**Jae Wook Lee** : He received his M.A. from Wonkwang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disaster management, fire service administration, and volunteer fire department(san18q@naver.com)

**Junhwi Park** : He received his B.A., M.A., and Ph.D. from Kyung Hee University, University of Portsmouth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is a Senior Researcher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which he has researched since 2005.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is criminal justice administration, crime prevention and organized crime. He has published 31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61 national reports(krpark@kic.re.kr).